

영등포구의회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
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4. 4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300호로 2014년 4월 8일 윤준용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랑·봉사의 적십자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지원 규정(안 제3조)

다. 적십자사 조직의 보조금 지급 등 규정(안 제4조)

라. 적십자사 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표창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 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조직의 활동지원과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.

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4조에 따르면 “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지원 대상 범위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로 규정하고 있음.

- 대한적십자사 사업목적을 위해 구 단위 조직으로 서울지사에 소속된 구로·금천·영등포봉사관이 있고(문래동3가 54-2 소재)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비 및 활동 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보조받고 있으며, 우리 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¹⁾을 지원하고 있음.

-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는 17개동 17개 봉사회²⁾와 478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,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봉사 활동, 구호사업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적십자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1) 2010년 7,150천원, 2011년 7,150천원, 2012년 7,150천원, 2013년 7,170천원

2) 신길6동 미구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음. 따라서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함.

- 다만,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영등포지구협의회가 대한적십자사 하부조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어 제외하였으며,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등록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.

관 련 법 령

■ 『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』

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)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]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]